

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, 일실행의 산정 방법 - 이행의익 vs 신뢰의익 관계 및 석명의무:

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3171 판결



(1) 이행의익 - 손해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, 즉 이행의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.

(2) 신뢰의익 -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, 즉 신뢰의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.

(3) 신뢰의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나(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)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(대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)에 인정되는 것이어서,

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(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)인 이행이익 상

당의 손해배상청구와는 성립요건이나 산정방법을 달리한다.

- (4)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효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효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).

- (5) 중복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나, 신뢰이익의 배상과 별도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일실효익,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허용될 수 있다. 피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주장을 하였고, 그중 어느 하나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며,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.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이 전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하자 있는 연사로 제직한 원단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우나, 하자 있는 연사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상실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배상을 구한 주장과는 양

립이 가능하다.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한편
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선택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. 설
령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, 원심으로서도 이행
이익 상당의 손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
여부 등 피고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
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.

국제계약, 영문계약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민형사소송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